

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과목 운영지침

제정 2011.02.15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과목(교과목 번호:931.537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과목의 개설) ① 임상법학과목은 3학년 1학기 및 2학기에 실무경력 전임교원 이름으로 개설한다. 이 경우 교원 1인당 수강인원은 30인 이하로 제한한다.

② 각 학기당 1학점 과목으로 개설하며, 학생별로 최고 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.

제3조(사전필수이수과목) 임상법학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수강 이전 학기까지 다음의 각호의 과목들을 이수하여야 한다.

1. 법학기초과목 : 공법(1,2,3), 민법(1,2,3), 형법(1,2), 법조윤리
2. 법학심화과목 : 민사소송법(필수), 형사소송법, 행정소송법, 헌법소송법(택1)
3. 실무기초과목 :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(필수), 민사실무기초, 형사실무기초(택1)

제4조(임상과정) ① 학생들은 매학기 80시간 이상 의뢰인 면담 등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의 제반 과정에 참여하여 담당교원 및 지도변호사의 지도하에 그중 일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임상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.

1. 지도변호사의 직접지도(매주 1시간 이상 총 15시간 이상)
2. 고객상담시 지도변호사와의 동석(총 15시간 이상)
3. 학생의 조사·연구 및 문서작성(총 45시간 이상)

③ 임상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조인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실비변상적 금전지급을 제외한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.

제5조(지도변호사의 선정) ① 법학대학원은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도변호사 후보명단을 작성한다.

② 법학연구소 소속 각 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는 전문분야의 지도변호사를 모집하여 법학대학원에 추천할 수 있다.

③ 담당교원은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변호사 1인당 학생 1~2인의 범위에서 지도변호사를 배정한다.

제6조(학점 및 성적) ① 담당교원은 지도변호사 및 학생의 지도와 교육수행여부를 확인하여 학점을 부여하여야 한다.

② 임상법학의 성적은 S/U로 표시한다.

③ 담당교원은 학점부여를 위하여 지도변호사 및 학생으로 하여금 별지목록 기재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센터는 담당교원을 보조하여 지도변호사 및 학생의 지도와 교육수행여부를 확인하고,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직원 등) ① 임상법학 운영을 위해 유급직원 및 사무조교 중 2인 이상을 담당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임상법학과목을 위한 전담 면담실 및 부속 회의실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임상법학 사례 등의 자료를 모아 매년 1회 이상 사례집 등 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.

제8조(법률상담실) ① 학생이 법학연구소 소속 법률상담실에서 무급조교로서 사건의 처리에 참여하는 경우 임상법학 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 이 경우 자문교수를 지도변호사로 본다.